

전주지방법원 2024. 5. 31 선고 2022가단34666 판결 [연대보증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훈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4. 12.

판 결 선 고 2024. 5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4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11. 4. 8. 주식회사 E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100,000,000원을 이자 월 2.5%,
변제기 2013. 4. 8.로 정하여 대여하고, 피고들은 2011. 4. 11.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
연대보증하였다.

위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공정증서(갑 제1호증)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데, 이 공정증서는 F이 원고,
피고들 및 소외 회사를 모두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다.

피고 B은 F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 B이 F에게 위
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(갑 제9호증)이 존재하고, 그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
피고 B의 것임을 피고 B도 인정하고 있으므로, 위 위임장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
추정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).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4. 9.부터 다 갚는
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허윤범